2024년「대체교사지원 사업」5회기 신청 안내

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**대체교사지원 사업**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보수교육, 결혼, 연가 계획이 있으시면 필요한 날짜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지원 후에는 신청 기간 조정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.

I. 공지사항

지 :	원 우	선 순	위	보수교육 (직무교육 우선 지원) > 본인결혼 > 연가 > 건강검진 > 사후 방문 지원 > 보수교육(승급·원장 사전직무교육)
지	원	기	간	2024. 5. 2.(목) ~ 2024. 5. 31.(금)
신	청	기	간	2024. 4. 1.(월) ~ 2024. 4. 10.(수) ※ 선착순 지원 아닙니다.
배	치	확	인	 ▶ 배치확인일: 2024. 4. 19.(금) 오후 3시 이후 ▶ 확인방법: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태 '배치' - 배치됨 / '신청' - 배치 안 됨 ※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며 배치 결과는 개별공지하지 않습니다.
비			고	 ▶본 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영유아 안전 및 대체교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유아활동 사진 촬영 및 어린이집 SNS 게시를 하지 않습니다. ▶대체교사의 업무는 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방보조업무, 기타잡무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
田. 신청기간안내

<5회기>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			1	2	3	4
			근로자 의날			
5	6	7	8	9	10	11
	대체 공휴일					
12	13	14	15	16	17	18
			부처님 오신날			
19	20	21	22	23	24	25
26	27	28	29	30	31	
	Х					

- ▶── : 지원 신청 가능한 날
- ▶보수, 결혼, 연가를 표기하여 신청
- ► 대체교사근무시간: 09:00~18:00 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▶ 연장반대체교사지원: 10:30~19:30 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
皿. 대체교사지원 사업 소개 및 안내사항

사 업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, 보수교육 참여 등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 목 적 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

추 진 근 거

- ▶ 영유아보육법 제17조(보육 교직원의 배치)
 -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 사를 배치한다.
- ▶ 영유아보육법 제36조(비용보조)

신 청 방 법

► 보육통합정보시스템(어린이집지원시스템)에서 신청: 메뉴보기 → 어린이집 운영 → 보육교직원 관리 → 대체교사신청 → 구분선택 (보수, 결혼, 연가, 예비군, 건강검진) → 휴가신청교사 → '2024년 5회기 클릭' → 휴가예정기간 입력 → 동의서 및 안내서 작성 → '저장' 클릭 ※ '결혼' 선택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

1. 지원 사유 별 우선순위

구분	우선순위	지원사유	지원일수	비고	
	1	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지원)	5일		
	2	본인 결혼(우선 지원)	1~5일	사전	
		연가	연간 1~15일		
상시	3	예비군 훈련	훈련기간		
	3	건강검진	1일	- 신청 - -	
	4	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지원	회당 1일		
	5	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	최대 10일		

^{*「}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제33조,「국민건강보험법」시행령 제25조 제3항: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

2. 지원내용

- 영유아 보육법 제 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, 시·도(시군구),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

사 업 내 용 및 안 내 사 항

3. 지원대상

- 신청 인원이 파견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, 센터 규정에 따라 배치

4. 안내사항

- 본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.
-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 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효율적인 반 운영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**대체교사는 어린이집 안내서에 명시한 반에서 고정 근무**합니다.
- 대체교사 지원 중 연차신청 교사가 출근하였을 경우 양 기관의 확인 절차 후 지원 철회 및 향 후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시,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.

5. 어린이집 지원중단

- 어린이집에서 연가, 보수교육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
- 지자체 대체교사와 이중지원 받은 경우
-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등
- ※ 위 사유의 경우 패널티 부여 사례에 해당하며 2회 이상 중복될 경우 지원 여부를 검토

6. 기타 문의 사항

■ 연락처 : 043)845-7505 내선 3번